



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결	서 무	간 사	의 장
재			이창현

제8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		일 시	2018. 12. 13(목) 17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인원	의장 이창현, 부의장 이상철, 김동훈, 한화택, 박규순, 박성호, 공민영, 김남균, 설창일, 노경조		
업무지원	간사 이승구, 서무 이해경		
불참의원	이승현		
발 표 자			
안 건	1. 총장선출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2.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 처리 방안 논의		

◎ 회의내용

- 간사 : 재적의원 11명 중 이승현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
- 의장 : 개회를 선언함

[안건 1. 총장선출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]

- 의원 : 활동 결과를 보고함
- 부의장 : 총장선출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다는 족적을 남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함

- 의원들 모두 소위원회 의견서 내용에 동의하여 의견서를 법인에 전달하기로 결정함

[안건 2.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 처리 방안 논의]

- 의원 : 총장업무추진비나 출장 내역 자료 요청에 관한 건은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과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추후, 본부에서 이러한 자료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단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평의회가 학교 측에 제재를 가하는 기관이 아닌 긍정적인 기구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학교 측에 계속 압박을 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고려하여 앞으로는 본부에서 총장업무추진비나 출장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고 발언함
- 의원 :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과 총장 업무추진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학교 측과 평의회와의 이러한 상황이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발언함
- 의원 :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 요청과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이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문이 종료되지 않아 예산 집행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평의회의 결정이 학교 측에 해가 된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실무 담당자의 부담도 고려하여 짚을 건 짚고 가지만 협조할 건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발언함
- 부의장 : 총장 업무추진비가 아닌 다른 자료를 요청하였다면 학교 측에서 답변을 제출했는지 생각해봐야 하며 혹여나 이러한 사안으로 교육부에 감사라도 청구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함
- 간사 : 추경예산 자문에서 요청한 다른 자료는 답변이 제출되었고 총장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에 관해서는 학교 경영상의 비밀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온 상태라고 설명함
- 의원 : 평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자료라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이 경영상의 비밀이라 제출이 어렵다면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정도의 자료라도 요구를 하고 그 답변을 받은 후 자문을 종료

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발언함

▪ 의원 : 대학평의원회의 위상도 올리면서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받은 후 자문을 종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발언함

▪ 의장 : 학교 측에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간단한 출장 내역 정도만 추가로 답변을 요청하여 제출을 받은 후 자문을 조건부로 종료하고 다음 평의원회에서도 총장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발언함

▪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 처리 방안에 관해 의원들이 표결을 한 결과,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 종료 4표, 추가 요청자료 답변 제출 후 조건부 종료 6표로 결정됨.

학교 측에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출장 내역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받은 후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을 종료하기로 하고 추후에도 총장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해당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함.

▪ 의장 : 의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.

붙 임 :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의견서 1 부.